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254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원경주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김소슬

변론 종결2020. 11. 10.

판결 선고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8.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6. 7.자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4. 접수 제22747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D, E, F로부터 인천 부평구 G 5층에 위치한 'H'라는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및 시설(기타) 일체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 B와 위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되(출자비율 약 4:1) 피고 B이 상주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6. I을 사업자로 내세워 'J'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4. 16. 원고에게 150,000,000원(이자 월 2.5%)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4. 17.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K 작성 증서 2018년 제286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9. 6. 24. 자녀인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위 차용증서 및 어음공정증서는 원고가 실소유한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시설 및 운영권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구의 문서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업소는 성매매 알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었고 원고 및 B의 투자 대상과 목적은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성매매업소의 권리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된 2018. 4. 16.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지배·운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5. 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041호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8. 2. 14.경 성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이후 이를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 사건 업소의 운영권에

대하여 단속 이후 원고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지분의 대가를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정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의 준소비대차약정이라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위 약정 체결

이후에도 피고 B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B은 이 사건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여 온 점, ④ 원고와 피고 B간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으로 인한 채무 이외에 다른 금전적인 채권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는 위 소비대차약정에 의해 발생한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은 합법적 영업인 안마시술소 운영을 빙자하여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그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불법 영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그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은 자녀인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2., 나.,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권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태호

별지